

법령 정비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	
신청인	회사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	
	주소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
실증특례 유효기간 계속연장 희망여부	희망함 [] 희망하지 않음 [] ※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7조제10항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시 실증특례가 종료됩니다.		
사업 명칭			
사업 내용	※ 규제와 관련된 사업 내용 기재 (필요시 추가서류 첨부)		
정비 요청 법령	※ 구체적으로 기재 (예. xxx법 제00조 제00항 제00호, 필요시 추가서류 첨부)		
법령 소관기관	※ 구체적으로 기재 (예. xx부 xx국 xx과)		
규제의 내용 및 정비 필요성	※ 규제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내용 작성 (필요시 추가서류 첨부)		
법령 정비 안	※ 규제법령의 조문 수정 의견 등 기재 (필요시 신·구조문 대비표 등 추가서류 첨부)		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0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정비 대상 법령 소관 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1부 2.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.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(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1부 4.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
------	--

처리 절차

요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관계 행정기관에 통보	→	관계 행정기관 검토·협의	→	법령 정비 판단 결과 통보	→	법령 정비 완료 통보
신청인		법령 소관 기관의 장		법령 소관 기관의 장/ 관계 행정기관의 장		법령 소관 기관의 장/ 관계 행정기관의 장		법령 소관 기관의 장 /중소벤처기업부장관		중소벤처기업부장관